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3년 6월 8일

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6월 8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0조에 따라 진입규제, 차별적 규제 등 사업자의 활동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문 내용 중 지역제한 문구 등을 삭제하여 위촉 가능한 입법·법률 고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(안 제2조제1항)

3. 규칙안 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”을 “변호사, 대학교수 등 입법·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촉) ① 의장은 <u>필요한 경우</u> <u>다음 각 호의 사람</u> 중에서 3인 이 내의 <u>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할 수</u> 있다.</p> <p>1. <u>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</u> <u>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</u> <u>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</u></p> <p>2. <u>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개설</u> <u>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</u>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	<p>제2조(위촉) ① ----- <u>변호사, 대학</u> <u>교수 등 입법·법률 분야에 지식과</u> <u>경륜을 갖춘 전문가</u> ----- --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【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】

제20조(입법·법률고문)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·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·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규칙」에서 정한다.